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9 | 2026.4.27 (2026.4.20~2026.4.2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의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을 확산하여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을 정하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사원 임대용 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1인)」,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총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설비, 관리·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재경위>, <과방위>, <복지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재정경제부) 7
-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8
-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11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2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2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12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재정경제부) ·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1인) 1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의원 등 10인) 1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의원 등 12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1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의원 등 10인) 2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1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3
•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의의원 등 11인)	23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의원 등 10인)	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5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7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2호 :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 자기주식 의 무소각에 따른 대응과 강화된 주주환원 기조
- **[방송통신(TMT)]** 정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 확정
-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점에서 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가상인 물·AI 위성과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리스크 -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조세]** Tax Intelligence 4월호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7) EU 그린워싱 관련 규제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발표 -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로컬 창업으로 확산, 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 추경을 통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연내 신속 추진,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 지원 - 과기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26), 비광역권 중심 6곳 추가 지정해 ‘창업도시’ 총 10곳 조성, 인재·R&D·투자·창업공간 등 패키지 지원 -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금융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혁신, 개방형 혁신, 재도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2026-04-24
-------	--	------------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음

1. (창업씨앗)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3.26~5.15)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경(0.2조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조속히 추진.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

2. (테크창업) 기술인재 중심 ‘창업도시’ 조성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 과기원이 소재한 4개 도시*를 연내 우선 지정하고 '27년 상반기 중 5급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

*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 창업 휴직(現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現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26년 4,500억원 이상,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뒷받침.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등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

아울러,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3. (로컬창업)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

글로벌 상권 17곳(∼'30,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30, 상권당 40억원)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 특히,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를 대폭 확대(300→450개사)하고,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

4. (혁신 창업생태계) 금융혁신·규제·제도전·개방형 생태계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①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②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③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중세트를 도입.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도 '26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

5급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4억원을 지원.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26년 30개 공정(추경480억원), '30년까지 1,000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2026-04-20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이 발생하여 총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조합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을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감감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

3.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 강화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하여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며,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4. 부실조합 적기 해산 및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 유도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
-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2026-04-23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음

1.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

- ① 반복 담합시 과징금 가중 강화 및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
 - (과징금 가중)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 (과징금 고시 개정)
 - (감면혜택 축소)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 박탈
- ② 담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부과
 - (내부감시체계 구축명령) 담합 재발방지를 위해 CP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시정조치
 -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 (구조적 조치)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
- ③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용이하도록 소송 제도 개선
 - (단체소송 확대)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
 - (자료제출명령 도입)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제도화

2.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 (내용)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 도입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
- (방식)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 검토

3.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확대 (가격담합 등 포함)
 - 현행은 입찰담합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조달청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 非입찰 방식의 담합(가격·생산량 담합) 시에도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대상 확대
- ② 반복 담합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현행은 담합 반복시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존재
- ③ 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상향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담합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차등화 ⇒ 담합 주도자(1년 → 1년 6개월) 및 단순 가담자(6개월 → 1년)에 대한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여 담합 재발 억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2026-04-21 시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회사 등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전환하여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며,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26-04-21 시행
-------	----------------	---------------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2026-04-23 시행
-----------	---------------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10-22 시행 예정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라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26-10-22 시행 예정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 대응 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2026-10-22 시행 예정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여 향후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4-21 시행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규제 특례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규정하며, 연구개발 지원 및 고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간소화 및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등 규제 특례의 내용 및 대상을 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서류의 보완 및 기간 산입,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하며, 기술료 감면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21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04.20. ~2026.06.0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2026.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제2조)

-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②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내지 제12조)

-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법률상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정부위원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율하고, 각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③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 (제13조 내지 제15조)

-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사업관리단이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를 위해 수행한 외부 용역 비용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직접적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함

④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제16조)

-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이 발굴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후보사업에 관한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⑤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 (제17조 내지 제29조)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 업무 위탁기관, 기금채 발행 및 관리 절차, 계정간 예수·예탁 절차,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공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공사로의 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문의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 (전화: 044-215-4951)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2.
~2026.05.15.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이 추가되는「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2026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설정 하면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한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사원 임대용 주택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안 제28조의2제12호)

-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를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함

② 사업소본 주민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개선 (안 제78조제1항제2호)

-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③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안 제102조제6항제7호의2)

-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연장함

④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안 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mailto:행정안전부_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3, 팩스: 044-205-896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3.
~2026.06.0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령안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26. 2. 25.)의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규정 (안 별표 1 제4호바목(4) 신설)

- 현행 등록기준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에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관광객들이 객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영업장은 물론 민박 예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정비 (안 별표 2 제2호가목1))

-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mailto:문화체육관광부_관광산업진흥과) (전화: 044-203-2835, 팩스: 044-203-347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2.
~2026.06.04.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

※ 문의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mailto: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통신분쟁조정팀) (전화: 02-2100-1625, 팩스: 02-2100-014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2026-04-20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2026-04-21 발의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9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1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안 제44조제2항)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026-04-23 발의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2026-04-20 발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직선화·복선화·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6-04-24 발의

현행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채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2026-04-24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026-04-23 발의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교체·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총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26-04-20 발의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5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 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04-22 발의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04-22 발의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026-04-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보건복지위원회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의의원 등 11인)

2026-04-22 발의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2026-04-23 발의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026-04-20 발의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및 제24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2 인)

2026-04-21 발의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회유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나, 하굿둑·방조제 운영과 토사·염분 변화, 오염원 부담 누적으로 하구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하구 생태의 회복을 통한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4-24 발의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04-21 발의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026-04-21 발의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026-04-21 발의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026-04-21 발의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와의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2026-04-22 발의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능형 주차장치는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와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상주 운영방식, 공공주택 내 도입 불가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특성과는 무관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설비, 관리·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장의3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전체회의	4/29(수) 10:00	- 전락수출금융지원 법안 공청회
	전체회의	4/30(목) 10:00	- 법안 심의 및 의결
	경제재정소위	4/29(수) 14:00	- 법안 심사
과방위	전체회의	4/28(화) 10:00	- 법안 상정, 현안 질의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4/29(수) 10: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4/30(목)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법안2소위	4/28(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4/28(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4/29(수) 16:00	- 법안 의결
국토위	청원소위	4/27(월) 14:00	- 청원 심사
	국토법안소위	4/28(화) 10:00	- 법안 심사
	교통법안소위	4/29(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4/30(목) 10: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7(월) 09:30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안도걸·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7(월) 10:00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7(월) 13:00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곽규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4/27(월) 15:00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 수리할 권리와 순환경제사회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홍배 의원실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4/28(화) 08:00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8(화) 14:00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책을 위한 과제와 방향	김남희·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4/29(수) 10:00	공공기관 개인정보 온라인 수집실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4/29(수) 14:00	함께 잡은 손, 더불어 만드는 K-방산 대도약	부승찬·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30(목) 10:30	제137회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시리즈 좌담회: 다시, 노동의 시간: 5회차 다시, 노동의 시간	박홍배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4/30(목) 13:00	YTN 정상화를 위한 공적 소유구조와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	김현·최민희 의원실 등	이룸센터 소교육실
자료집 등	4/27(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5호(통권 제29호) 발간	국회도서관	
	4/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8호(통권 제296호) 발간		
	4/29(수)	「금주의 서평」 제2026-16호(통권 제775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21(화)	「Data+」 제2026-6호(통권 제30호)	국회도서관	
	4/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7호(통권 제295호)		
	4/22(수)	「금주의 서평」 제2026-15호(통권 제77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0(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2호 :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 자기주식 의무소각에 따른 대응과 강화된 주주환원 기조
4/21(화)	방송통신(TMT)	정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 확정
4/23(목)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점에서 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가상인물·AI 위성과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리스크 -
4/23(목)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 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4/23(목)	조세	Tax Intelligence 4월호
4/24(금)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7) EU 그린워싱 관련 규제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